

관광농원의 실태 및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

- 대구인근지역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

이기철*·김재광**

*경북대학교 조경학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encouragement of tourist farms around Taegu area

Lee, Kee-Cheol* · Kim Jae-Kwa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yungpook National Univ.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yungpook National Univ.

Abstract

This research is written for offering an approach to activate the stagnated industry of the tourist farm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operational problems and situation on some existing tourist farm nominated as such by the authority.

There will be some considerations from three different categories : local autonomous groups, tourist farm associations and farm owners. On the other hand, it is assumed that this research can also be utilized as a basic material for activating the tourist far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The operational proble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are as follows : lack of a specialized product development, the farm operation fund, lack of operational or management ability, lack of public information, etc. There are other problems regarding law, institution and supporting : complexity of the current system involving all kinds of permission, shortage of financial and taxation supporting, lack of training an expert manpower, lack of ability and cooperation of a deskclerk in charge, etc.

Here are some suggestions taking into consideration a respective sector of local autonomous group, tourist farm associations and farm owners for activating the tourist farms in the suburban area of Taegu City.

First, a mental turnabout toward a tourist farm is needed from local autonomous groups. The law and institutional base should be arranged while the financial and taxation support is materialized.

Second, tourist farm associations should amend or reinforce the existing institution to refresh the current recognition toward the tourist farm through many publicity activities. On the other hand, they should develop the overall tourist farm industry into a better service industry of the rural community by keeping an active system of cooperation with other related groups.

Finally, It is advised that they should conceive farms and facilities which can symbolize the tourist farm from the stage of the first construction. In addition to a four-season souvenir development, an effective publicity activity and rational investment management. Above all, they should train themselves in terms of a service spirit before they see the prosperity of the tourist farm community.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민의 소득증가, 소비수준이 향상되고 교통 수단의 발달, 근로시간의 단축, 복지수준에 대한 욕구 증대, 다양한 뉴스매체의 보급 등 생활이 윤택해짐에 따라 여가생활에 대한 욕구도 다양하게 표출되기 시작하였고, 문화적, 유희적 특정 장소를 찾아 여가를 즐기는 형태에서 개개인이 좋아하는 레크레이션을 찾아서 직접 체험하는 체형형으로, 또 가족 구성원들이 다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족형 레크레이션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물론 도시근교의 농업용지는 주택단지 건설이나 공업용지로의 전환이 계속됨에 따라서 소중한 농촌생태계와 자연자원에 대한 보존이 힘들어지고, 전면적인 시장경제의 개방으로 인한 수입 농산물의 증가, 국내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등으로 우리의 농촌지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1차 산업인 농업의 기본적인 존립과 자연자원에 대한 보전, 도·농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 및 지역경제발전에 경쟁력을 갖기 위한 대책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같은 자연공간에서의 여가활동 증가와 농어촌에서의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을 시도하려는 노력 등으로 농외소득 증가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 즉 농어민은 1차산업인 농·축·산·어업을 기본 요소로 활용하고 3차산업인 서비스업, 즉 관광산업을 접목한 형태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함으

로써 1차산업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영형태인 관광농업이 시작되게 되었다(농림수산부, 1995, p64). 이러한 도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다양한 여가상품과 더불어 등장하게 된 것이 관광농원이다. 그러나 관광농원 사업에 대한 전문 인력의 부족, 사업 계획의 미흡, 관광상품의 개발과 홍보 부족, 도시민의 관광수요에 대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미비, 법제도적인 지원의 미흡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농원의 개념과 개발 및 운영방법을 평가해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정책적, 운영측면에서의 준비가 미흡하고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경영실태 파악, 지원의 미비 등 질적인 수준의 향상이 없는 상태에서 관광농원에 대한 인·허가만 계속되어 양적인 증가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경제위기 이후 경영 부실로 인한 부도, 파산, 허가취소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며, 사업 본래의 취지에서 의도한 건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향락위주이거나 음식점 위주로 변환한 변칙적인 영업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구 인근지역에 관광농원지구로 지정되어 조성 및 운영 중에 있는 관광농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현황과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관광농원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평가하고, 침체되어 있는 관광농원을 활성화시키고, 이용자인 도시민의 여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운영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첫째, 최근 도시민들에

계 1차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생산의 의미를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점차 바뀌어 가는 관광위락 행태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의 농외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내용적인 개념을 파악하고 둘째, 국내외의 관광농업과 관광농원에 관한 연구에 대한 이론적인 고찰을 하고, 셋째, 경북 지역의 관광농원 중 대구에 인접해 있는 19개소의 관광농원을 직접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넷째, 관광농원의 정책수립, 운영 시 사업취지에 맞는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사례 조사를 통해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경북지역 내에서 관광농원으로 지구지정을 받아 현재 조성 및 운영 중에 있는 관광농원 중에서 대구광역시에 인접하여 이용 시 지리적인 이점을 가질 수 있는 19개의 관광농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직접방문 및 서면조사를 통하여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II. 관광농원의 이론적 고찰

1. 관광농원의 개념

관광농원은 농업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선용의 한 형태로서 넓은 뜻으로는 농장견학, 관찰, 영농체험 등을 총칭하는 레크리에이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관광농원은 농림업의 한 과정 또는 전부를 레크리에이션 형태로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거나 농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여하거나 생산물의 직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반적인 레크리에이션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유승우 외, 1997, p.2-18). 이러한 관광농원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림업 시설이 있어야 하고, 둘째로는 일정 기간 관광객이 농림업 행위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여정의 과정으로서 휴양시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이항구, 1988, p.21-27). 즉 생산

물을 생산하는 1차 산업과 서비스가 포함된 3차 산업의 복합적인 성격을 함께 가진 농림업의 한 경영형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관광농원은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2항 1에 의거하여 “농어민이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림생산물을 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시설(취사시설을 갖춘 농원여관업을 포함한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부수되는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관광농원의 유형분류

관광농원의 유형분류는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상지의 입지조건을 파악하여 적절한 개발유형을 선택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개발방향, 관리지침, 제도적 장치, 시설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관광농원 수립계획을 세울 때 가장 적합한 유형을 선정하여 개발함으로써 다양한 이용자의 레크리에이션 욕구에 기여할 수가 있고, 획일적인 관광농원의 개발과 운영을 피할 수 있다. 농림부에서는 관광농원의 기능에 의한 유형분류를 하고 필요한 시설을 다음 같이 제시하고 있고, 현재 관광농원 사업 등록상 다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분류를 하고 있다(경상북도, 1997, p.8-10).

3. 국내 관광농원의 발전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농촌공원과 비슷한 개념의 주말농장이 1969년 5월 말경 수원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후 1971년 평택 어린이 관광농원이 처음으로 개원하게 된다. 그러나 그 이후의 농원 상당수가 산지 직판형 관광농원 형태로 운영되다가 부동산 투기 등의 부조리를 수반하게 되면서 강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서히 관광농원 관련제도의 제정과 조성이 활기를 띠기 시작해서 1983년에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강촌유원지, 설악산 주변 등 7개소에서 농가 58가구가 참여하는 관광임대농원 사업을 계획하게 되며, 농촌지역에 관광사업의 개

〈표 1〉 관광농원의 시설, 기능에 의한 유형분류

유형	조성예시
자연학습형	기본시설, 동식물원, 민속자료관, 식당, 캠프장, 자연학습관찰장, 운동장, 놀이터 등
주말농원형	기본시설, 주말농원, 농기구창고, 숙박시설, 식당, 특산물판매장, 낚시터, 놀이터, 야영장 등
심신수련형	기본시설, 야영장, 민속자료관, 운동장, 수영장 등
농어촌휴양형	기본시설, 숙박시설, 식당, 야영장, 휴게소, 특산물판매장 등
효도농원형	농장, 부속농가주택, 농업부대시설, 가공시설 등

〈자료 : 농림수산부, 1996〉

밭이 1984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국가 경제가 개방경제로 전환됨에 따라 농가소득 증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농외소득원에 대한 개발이 강조되기에 이르렀고, 이를 위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다방면에서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농외소득 증대방안의 일환으로 농림수산부가 1984년에 12개의 관광농원 개발 시범지구를 조성하였고, 그후 해마다 개발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여 저리의 융자를 통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332개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지역에도 현재 52개소가 운영 또는 조성 중에 있다.

경북지역의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지난 1986년부터 1999년 말까지 69개소가 지구로 지정되어있으나 그동안 참여농가의 사업의욕 저하, 부실경영, 합리적 운영방안의 미숙 등의 이유로 취소된 17개소의 농원을 제외하고 현재 52개소가 조성 또는 운영되고 있으며, 총 194호 농가가 참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관광농원 정책의 변화 및 관련법

우리나라의 농촌지역 관광사업의 개발은 1983년 농촌진흥청의 조사보고를 거쳐 1984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후 1987년 전국적인 실태가 조사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1988년에 기존에 시행되어오던 정책의 일부가 보완되었으며, 1989년에는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개발시험 사업이 신설·추가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농어촌의 농외소득원의 증대에 치중하는 정책수단으로서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관광농업의 개발에만 치중되어 왔다. 그후 1990년에 제정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단지, 민박마을 등 관광소득원에 대한 정책적 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1984년에 실시한 시범사업부터 1991년까지는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으로 전개되고, 1992년부터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으로 바뀌게 된다. 또한 1993년까지는 '관광농업개발'로 정의되었으나 1994년부터는 '관광농원개발'로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991년까지는 '농어촌 관광소득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 도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농어촌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농어촌에 새로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데 있다고 그 사업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1992년에 바뀐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서는 앞의 세가지 사업목적 이외에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농어촌의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개발 육성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자원의 생산화를 도모하고, 증가하는 국민여가수요를 농어촌 공간으로 수용함으로써 건전한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추진하여 농어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킨다

는 내용이 추가로 제시되고 있어서 단순히 농어촌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차원을 넘어서, 균형을 이룬 지역 개발에 기여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1984년부터 정책사업으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관광농원 개발사업 시책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개발유형과 규모, 참여자격, 대상지역, 지구지정 그리고 자금 지원 등의 여러 가지 규정은 1988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참여자격은 1987년까지는 개발지정지역에 거주하고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전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5호 이상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1988~90년에는 비농민의 참여를 허용하고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도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이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타 지역 주민과의 위화감 조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제재 조치의 일환으로 다시 1991년부터는 시장·군수, 농업기반공사, 농·축·임협,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고, 농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현지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자기소유의 토지를 관광농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자로, 농민 3호 이상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으로 구성되고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 및 출자규모가 3억원 이상이며,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의 자금 지원도 1990년까지는 신규지구 2억원 이내, 기 지정지구는 1.5억원 이내로서 연리 8%,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자금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신규지역의 무분별한 증대로 인한 문제로 인해 1991~1996년까지는 신규지구 1.5억원 이내, 기 지정지구 2억원 이내로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하지만 물가의 인상 등의 요인으로 1997년부터는 총사업비의 70%이내로서 지구당 4.5억원 이내로 신규지구 2억원 이내, 기 지정지구 2.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상환조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기존의 연리8%에서 1992년부터는 연리5%에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지원금에 대한 금리가 조금 하향 조정되었다가, 다시 1997년부터는 연리 8%에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금리가 다시 인상되었으며 그 상환기간에 대한 조건도 변경되었다. 하지만 2000년 10월 현재 기존 관광농원에 대한 관련제도의 미비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많은 농원들이 부실경영, 적자경영, 부도가 이어지고 있어서 신규지구에 대한 지원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발규모는 84년 추진 당시에는 2만㎡ 미만으로 시작하였다가 85년에는 3만㎡ 미만으로 늘었으며, 88년에는 1만㎡ 미만, 89년에는 다시 3만㎡ 미만, 92년에는 1만㎡ 미만, 96년에는 5만㎡ 미만, 98년에는 6.6만㎡ 미만으로 계속 일관성 없이 변화해 왔다.

이러한 면적기준에 관광농원의 설립취지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96년 이후에 신규 지정되는 관광농원에서는 영농체험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숙박, 식당시설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작목의 입식면적은 4,000㎡ 이상으로서 관광농원지구 지정면적의 100분의 40 이상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시설 내에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30㎡ 이상의 규모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율시설로는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운동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물 제공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숙박시설의 면적은 작목 입식면적의 10%이내, 식당시설면적은 작목입식 면적의 5%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종진, 1996).

이와 같이 관광농원에 관련된 정책과 면적 및 시설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규모, 참여자격, 지원금 제도 등의 기준에 대한 변화가 심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관광농원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촌 관광개발과 관련된 상위관련계획으로는 국토종합개발계획, 신경제 5개년계획, 전국관광종합개발계획 등이 있으며, 관광농원과 관련된 관련법규로는

<표 2> 관광농원의 운영현황

순번	소재지	농원명	지정년도	규모(ha)	참여농가	작목입식(㎡)					유형				연간내방객(명)
						입식면적	과수	가축	특용작물	기타	경영형태별	기능별	경영주체별	채류형태별	
1	경주시 하동	부성파크	1989	3.7	1	36,300	36,042	257.4	-	-	농산물판매	농촌휴양형	단독농가형	단순경유형	-
2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옥산	1994	2.8	5	14,190	13,530	-	-	양어장(660)	농산물판매 및 채취형	농촌휴양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1,200
3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석천	1994	3.0	1	14,850	-	379.5	-	초지(14,470.5)	농산물판매 및 채취형	농촌휴양형	단독농가형	채류형	500
4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OK그린	1995	5.0	1	20,295	-	165	-	초지(19,800)	농산물판매 및 채취형	농촌휴양형	단독농가형	채류형	4,800
5	김천시 어모면 중앙리	아천	1989	3.4	4	13,734.6	7,794.6	-	-	잔디(5,940)	장소제공형	심신수련형	소수농가형	경유목적형	25,000
6	김천시 봉산면 태화리	동굴	1994	1.2	7	4,933.5	2,484.9	577.5	1,871.1	-	장소제공형	심신수련형	집단농가형	채류형	5,000
7	김천시 남면 월명리	장해열	1994	2.2	1	8,019	4,395.6	330	-	벼(3,293.4)	장소제공형	심신수련형	단독농가형	채류형	800
8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도리사	1997	2.1	3	19,767	13,523.4	164	1,273.8	양어장(999.9)	장소제공형 및 채취형	농촌휴양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
9	영천시 고경면 용천리	약수	1991	3.31	5	12,870	3,729	2,409	1,320	-	장소제공형	심신수련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25,000
10	영천시 청통면 처일리	은해사	1991	5.01	5	21,615	21,450	165	-	-	장소제공형	심신수련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52,000
11	영천시 고경면 덕정리	황수탕	1993	2.01	6	9,306	9,240	66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집단농가형	채류형	6,000
12	영천시 북안면 고지리	고지	1994	1.21	5	6,600	6,600	-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집단농가형	채류형	4,000
13	경산시 와촌면 신안리	갯바위	1994	2.3	6	12,365.1	10,715.1	1,650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집단농가형	채류형	200,000
14	군위군 효령면 매편리	찬곡	1994	2.0	5	10,395	8,910	-	-	주말농장(990)	장소제공형	주말농원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2,450
15	청도군 이서면 팔조리	청솔	1993	0.9	5	7,260	7,260	-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소수농가형	경유목적형	5,000
16	청도군 각북면 남산리	임마누엘	1995	2.2	10	9,550.2	9,550.2	-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집단농가형	채류형	20,000
17	성주군 수륜면 신정리	청파주말	1993	0.9	6	6,600	4,827.9	1,772.1	-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집단농가형	경유목적형	2,000
18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송화주말	1995	1.0	1	4,860.9	-	4,204.2	656.7	-	장소제공형	농촌휴양형	단독농가형	채류형	7,500
19	철곡군 가산면 금화리	금화	1995	1.0	5	6,600	6,600	-	-	-	장소제공형	주말농원형	소수농가형	채류형	12,000

국토이용관리법, 자연공원법, 관광진흥법, 도시공원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농어촌소득원개발법,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이 있다. 이중 관광농원 사업시행에 실질적인 기준이 되고 있는 법률은 농어촌정비법이다.

III. 관광농원의 실태조사 및 분석

1. 관광농원의 운영실태

가. 조사대상

한국관광공사에서 1989년에 수립한 전국 관광 장기종합개발계획은 전국을 북부관광권, 중부관광권, 서남관광권, 동남관광권, 제주관광권인 5대 관광권과 24개의 소관광권으로 나누어 관광개발권역을 설정하였다(한국관광공사, 1989, p.21-26). 그 중에서 동남관광

권에 속하는 대구경북권 내에 소재한 52개소의 관광농원 중에서 대구시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주이용자인 대구시민이 관광농원을 직접 방문, 이용하기에 적당한 도달거리 1~2시간 내에 위치해 있는 27개의 관광농원 중에서 현재 조성 중인 곳과 조성 후 일년이 경과하지 않아서 관련 통계자료가 미비한 농원을 제외하고, 해당 담당관서인 경상북도 농정과에서 통계자료 및 주기적인 점검내용을 비치하고, 비교적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판단된 19개의 관광농원을 본 논문의 조사대상지로 하였다.

나. 결과 및 분석

1) 관광농원의 유형별 분석

가) 기능별 유형의 현황

대상지 농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3>에 서와 같이 농촌휴양형의 형태로 개발된 농원이 63.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농산물 생산이라는 농원의 기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숙박, 휴식 중심의 형태로 치우쳐서 1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는 심신수련형이 26.3%, 주말농원형이 10.5%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연학습형 형태의 관광농원은 조사 대상지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농원 경영자들이 경제적인 수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편협적인 관광농원의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또한 주말농원형이나 심신수련형으로 등록이 된 일부 관광농원도 운영상의 어려움과 홍보의 미흡으로 대부분 농촌휴양형의 성격을 띠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관광농원의 기능별 조성 현황

구분	농촌휴양형	주말농원형	심신수련형	자연학습형	계
농원수	12	2	5	0	19개소
구성비	63.2	10.5	26.3	-	100%

나) 경영주체별 및 참여농가수 현황

참여 농가수 현황을 관광농원의 유형분류에 따라 그 경영주체별 분류로 나누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인의 단독농가가 경영하는 단독농가형이 5개소이며, 2~5호의 농가가 같이 운영에 참여하는 소수농가형은 9개소, 6호 이상 또는 마을 전체 농가가 집단으로 참여하는 집단 농가형도 5개소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관광농원의 실태를 보면 관광농원 설립에 대한 인·허가를 받기 위해, 주위 농가의 형식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대부분의 경영주체는 특정 개인이 맡고 있어서 농의소득 증가나 농촌유휴인력의 흡수라는 원래 설립취지와는 많이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 관광농원 경영주체별 현황

구분	단독농가형	소수농가형	집단농가형	계
농원수	5	9	5	19개소
구성비	26.3	47.4	26.3	100%

대상지 내의 관광농원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수는 평균 4.31호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경북지역 전체 평균인 3.7호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여농가수 현황은 <표 5>에서와 같이 4~5호가 가장 많은 8개소로 42.1%를 차지하고 단독형과 6호 이상의 농가가 참여한 곳이 각각 5개소로 2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관광농원 참여 농가수 현황

구분	1호	2호	3호	4~5호	6호 이상	계
농원수	5	0	1	8	5	19개소
구성비	26.3	-	5.3	42.1	26.3	100%

다) 체류형태별 현황

조사대상 관광농원의 체류 형태별 현황은 <표 6>

에서와 같이, 체류형이 15개소로 78.9%를 차지하고, 경유목적형이 13개소, 단순경유형이 1개소로 파악되었다. 체류형의 경우 대부분의 농원에서 농원여관형태의 숙박시설만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방갈로 형태나 민박, 일반여관 순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관광농원 체류형태별 현황

구 분	단순경유형	체류형	경유목적형	계
농원수	1	15	3	19개소
구성비	5.3	78.9	15.8	100%

라) 경영형태별 현황

관광농원의 경영 형태별 현황은 〈표 7〉에서와 같이, 장소제공형이 14개소로 73.7%를 차지하고 있고, 농산물 판매형이 1개소 그리고 농산물판매 및 채취형 또는 장소제공형 및 농산물 채취형과 같은 복합형 경영형태를 가진 곳이 4개소로 21.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설립 취지에 맞게 관광농원의 고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산수단 임대나 농산물 채취를 통한 농사체험이나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형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표 7〉 관광농원 경영형태별 현황

구 분	생산수단 대여형	농산물 채취형	장소제 공형	농산물 판매형	복합형	계
농원수	0	0	14	1	4	19개소
구성비	-	-	73.7	5.3	21.0	100%

2) 지정면적별 조성현황

대구 경북지역의 관광농원 지정 면적은 114.2ha로 개소당 평균면적이 2.2ha로 나타나고 있고, 대상지 관광농원의 평균 면적은 2.37ha로 전체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원의 지정면적은 2~3ha 미만이 36.8%인 7개소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1~2ha와 3~4ha가 각각 4개소로 21.1%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농원이 1~4ha의 규모로 조성되어 있었다.

〈표 8〉 관광농원 지정 면적별 조성 현황

구 분	1ha 미만	1~2 ha	2~3 ha	3~4 ha	4ha 이상	계
농원수	2	4	7	4	2	19개소
구성비	10.5	21.1	36.8	21.1	10.5	100%

3) 작목입식 면적비율별 조성현황

작목입식에 대한 현황은 〈표 9〉과 같이, 작목입식 면적비율이 40~50%가 되는 농원이 9개소 47.4%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은 50~60%를 차지하는 농원이 5개소 26.3%, 60~70%가 3개소 15.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70% 이상인 곳도 2곳으로 대상 농원의 모든 곳이 작목입식의 기준면적(지구지정면적의 40%)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작목의 종류와 관리상태는 해당 관광농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농원 허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방치해두거나,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표 9〉 관광농원 작목입식 면적 비율별 조성 현황

구 분	40% 미만	40~50 %	50~60 %	60~70 %	70% 이상	계
농원수	0	9	5	3	2	19개소
구성비	-	47.4	26.3	15.8	10.5	100%

4) 농원의 소득규모별 현황

대상지 관광농원의 순소득(금융비용 제외)은 농원당 평균 43.7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소득액별 분포 현황은 〈표 10〉과 같으며, 20~50백만원이 8개소(44.5%)로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20백만원 미만이 4개소 (22.2%)로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며, 100백만원 이상 소득을 보이고 있는 농원도 2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경영악화로 인해서 2

개소의 농원이 적자운명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순소득이 100백만원 이상을 보이는 2곳의 관광농원은 단체수련시설을 갖춘 대규모 농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관광농원의 주 소득원은 음식물 판매 및 숙박이 주수입원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0〉 관광농원 순소득 현황(1999년 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적자	0	~20	20~50	50~100	100 이상	계
농원수	2	0	4	8	2	2	18개소
구성비	11.1	-	22.2	44.5	11.1	11.1	100%

※ 도리사 관광농원은 자료 없음

5) 연간 내방객 현황

대상 관광농원을 다녀간 연간 총내방객수는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73,250명으로, 농원당 평균 19,645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3만명 이상이 이용한 농원도 2개소(11.7%)에 이르고 있어, 농원마다 이용객의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농원이나 규모가 적거나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농원의 경우에는 이용객수가 상당히 적었으며, 단체 연수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유명관광지 인근에 위치해서 음식물 판매를 위주로 하는 농원의 경우는 많은 이용객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1〉 관광농원 연간 내방객 현황

(단위 : 천명)

구분	1 미만	1~5	5~10	10~30	30 이상	계
농원수	2	5	4	4	2	17개소
구성비	11.7	29.4	23.6	23.6	11.7	100%

※ 도리사, 부성파크 관광농원은 자료 없음

IV. 관광농원의 문제점 및 분석

1. 관광농원 운영상의 문제점

가. 시설 운영의 미흡

조사대상 농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업기반시설을 기준으로 내방객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조화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영농체험시설이 관광농원 인·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지구지정면적의 4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에만 맞추고 있는 실정이고, 더욱이 인·허가 후에 이러한 시설의 확장은 물론 기존의 시설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전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현실이고, 식당시설이나 숙박시설 등의 편의시설은 운영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고, 수익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에 치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관광특화상품 개발의 미비

대부분의 조사대상 관광농원에서는 특색있는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음식, 숙박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음식의 품목도 대부분 한정식, 탕류 및 고기구이 등의 일반적인 품목에 한정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농원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농원이 속해있는 지역의 특화농산물을 현장에서 생산, 가공한 상품의 개발과 홍보 프로그램, 특산물을 이용한 이벤트 등의 개발로 특화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 농민에게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와 농산물의 신선도 확보 및 운송비용 절약 등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꾀하고, 나아가 지역특산물에 대한 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미흡

관광농원은 그 설립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듯이 도시민이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여가활동을 하면서 1차산업의 중요성을 영농활동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

야 하고, 즉 도시민이 여가선용의 장소로서 관광농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광농원은 도시민이 쾌적한 자연 속에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관광농원 조성 시 시설면에서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음식점 형태나 숙박업소 형태를 띄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만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도시와 차별되는 특성있는 환경의 개발이 적은 현실이다. 또한 도시민이 여가활동의 장소로 관광농원을 이용함으로써 농촌과의 이질감을 완화·해소하고 자라나는 청소년에게는 자주 접하지 못하는 농촌문화,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농원뿐만 아니라 경북지역의 다른 농원들도 숙박, 음식점 위주의 시설이나 경영에 주안점을 둔 나머지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할 수 있는 영농체험시설, 자연체험시설이나 운영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이어서 이용객이 농업과 농촌지역을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미흡한 실정이다.

라.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미흡

관광농원개발을 계획, 준비하고 운영할 때 주변의 입지여건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관광농원의 입지를 결정할 때나 운영 시에도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한다면 홍보프로그램, 시설 투자면에 있어서도 더욱 효과적인 농원의 운영을 할 수 있지만 주변의 자연적인 환경과 주변의 호수, 강, 해수욕장, 국·도·군립공원, 역사적인 유적지, 관광지와 연계한 개발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마. 농원 운영자의 경영능력 부족

관광농원은 1차 산업을 그 기반으로 해서 농업을 관광자원화 하여 도시민들이 여가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기회 및 장소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농원의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운영자가 지역 농민으로 되어있고 실제 경영자는 도시민이거나, 지역의 농민이 직접 경영하는 관광농원이라 하더라도 이용객 유치에 위한 프로그램개발, 농원의 운영관리, 고

객관리, 시설관리에 있어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현재 관광농원의 운영주체는 참여농가수가 많더라도, 대부분이 특정 농가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농원을 운영하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참여한 전체농가가 효율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체운영규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바. 운영자금의 부족

경영자가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초기 기반시설에 과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영을 시작한 후 자금난으로 인해 농원의 부실을 초래하게 되고 농원의 부실은 이용자의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경영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 85년 이후 경영악화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업한 농원의 수도 69개소 중에서 24.6%인 17개소로 나타나는 현실로 알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농원 경영자들은 자금회전이 빠른 숙박, 음식점 위주로 농원을 운영하는 경영형태로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 농원의 안내홍보 미흡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꾸준한 내방객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원들은 체계적인 홍보전략이 없는 상태이며, 조직화된 관광농원단체나 농협, 관공서에서의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구지정 후 다년간 경영해 오는 농원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내방객 수가 유지되고 있지만, 개원한지 얼마 되지 않은 농원들은 도시민들이 그 위치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현실이다.

2. 법·제도 및 지원상의 문제점

가. 인·허가 제도와 사업승인 시 문제

관광농원개발 사업은 관할 시장군수에게 계획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현지확인 및 용자 취급기관(농협)의 신용조사 등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 장관이 지원사업비를 확정,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농어촌정비법

제87조에는 사업계획 승인 시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건축법, 공중위생법, 식품위생법 등 사업추진 제반 관련사항에 대해서 사전협의를 거칠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에 따라 사업자가 일일이 따로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고, 또한 각 관련 부서간의 업무협조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나. 관련시설의 설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관광농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은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관광농원을 신규로 조성할 경우 농원의 규모는 50,000㎡ 미만으로, 또 지구지정면적의 40% 이상을 작목입식면적으로 조성해야 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사항에 대한 의무적 이행을 요구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규제조항을 두고 권장 시설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 사업비 지원의 부족

현행법상 관광농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은 일률적으로 신규지구의 경우는 2억원 이내, 기 지정지구의 추가사업의 경우에는 2.5억원 이내로, 최대 4.5억원까지만 융자지원이 되고 있고,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있고, 금리는 8%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농원사업자의 대부분이 담보력이 약해서 융자한도액을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그 일부만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고, 오히려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채나 일반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연 8%라는 이자는 사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고, 상환기간의 연장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라.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관광농원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원의 경영자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자들은 관광농원에 대한 이해와 중요한 요소인 농

업에 대한 전반적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책임자나 일선 담당공무원들은 업무과다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의 미흡 등으로 농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자율성 부여 등의 업무효율이 있어야 하지만, 농림부의 사업지침서 규정에 따른 일률적인 관련법해석 등으로 관광농원 사업에 진정한 협조자가 되지 못하고, 효율적인 경영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관리의 미흡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관할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시장군수는 반기별로 1회 이상 해당 사업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운영실태, 관리실태를 지도·점검하여 부실지구에 대한 정비 및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농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상 사업승인의 책임은 군수에게 있고, 실태점검과 예산배정의 책임은 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해야 할 주무부서와 정책체계에도 상당한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이호철, 1997, p.166-167).

V. 관광농원의 활성화 방안

1. 농원 경영자에 의한 활성화 방안

가. 관광농원에 대한 개념 재확립

관광농원이 설립 목적에 나타나듯이 도시와 농촌간의 상호교류증대, 농외소득향상, 농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일선에서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농원의 운영주체는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원의 운영 주체는 관광농원의 설립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에 합당한 경영을 함으로써 농원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 관광농원의 전문화 및 특성화

1) 관광특화상품의 개발

지역별 1지역1명품 및 우수 농산물 지정현황, 각 지역별 가공품 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이나 우수 농산물로 지정된 농작물을 중심으로 재배, 가공하여 농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특색있는 상품으로 내세우도록 하고, 다양한 종류의 지역특산물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표 12, 13〉참조). 이러한 특화상품은 일반적으로 농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오염되지 않은 자연을 제공하는 농산상품이 되어야 하며, 가격면에서는 물론 제품의 질 또한 높아야 한다. 그리고 가공상품은 견고하고 합리적인 제품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대량화보다는 소량 전문화하고, 제작과정에 참여를 유도하는 등 체험을 통한 상품의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12〉 지역별 1지역1명품 및 우수농산물 지정현황 (1999년말 현재)

시군별	1지역 1명품	우수농산물	비고
	품목명	품 목 명	
경주시	황남빵	양송이버섯, 토마토	
김천시	포도	자두, 방울토마토, 포도(캠벨)	
구미시	수박	메론, 방울토마토	
영천시	포도	포도, 마늘식초, 포도(캠벨)	
경산시	포도	포도(MBA), 깻잎	
군위군	오이	사과주스, 사과	
청도군	복숭아	복숭아, 미나리	
고령군	딸기	딸기, 참외	
성주군	참외	참외(금싸라기), 사과	
칠곡군	장미	장미, 오이	

※ 경상북도 유통특작과

2)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요리상품개발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자체 요리의 개발은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고, 관광농원에서 이러한 특산요리를 개발, 홍보를 하는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것은 농원의 소득증대, 전문화를 할 수 있는 장점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농원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화된 향토요리나 특선요리의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이용객의 래원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3) 지역산업과 연계한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농원이 해당 지역의 주산업과 연계하여 입지 조건이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사업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즉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산업과 연계된 전문적인 육성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산업의 지원정책이 접대, 오락시설 위주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관광유인자원에 대한 개발에 중점을 두도록 노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 합리적인 농원 운영방안 수립

대부분의 농원에서는 일부 계절에만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비수기의 이용과 4계절형 이용을 위해서 연중, 월별 이벤트 행사를 계획하는 것도 합리적인 농원 운영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경영형태 중에서 다기능 복합형보다는 저기능 복합형으로, 시설형보다는 체험형, 참여형으로 전환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라.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

경영자로서의 최대의 홍보방법은 찾아온 이용객에게 매력요소를 줌으로써 차후 다시 농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매체로 TV, 라디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이용하도록 하고, 일선 행정관서에서 발행하는 관광안내책자, 지도, 지역안내물, 책자에 홍보를 하고, 농협이나 관광농원협회에서의 홍보책자나 언론매체의 레저면을 통한 홍보 등의 적극적인 홍보전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농원이 개별적으로 하기 힘든 홍보는 단체를 통해 공동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도시에 자매결연 기업, 학교, 아파트단지 등을 선정해서 이를 통한 홍보 활동도 효과적이다.

2. 행정기관에 의한 활성화 방안

가. 법·제도적인 정비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표 13> 지역별 가공산업 육성현황

(1999년말 현재)

시군별	전통식품	산지일반	특산단지(민속공예)
경주시	신라주(리큐르주)	-	기와
김천시	과일잼, 매주, 호박즙 등	과하주, 약초가공	목공예, 농악기, 상석 등
구미시	-	-	-
영천시	한방차, 된장, 포도식초 등	빵잎차, 토종밀국수 등	도자기
경산시	매주, 된장, 대추차 등	대추음료, 포도주 등	-
군위군	-	농금주스	-
청도군	엿기름, 감음료, 솔잎차 등	아이스홍시	도자기, 삼베
고령군	김치, 단무지	단무지	도자기
성주군	밀고추장, 유과, 식초 등	염소곰탕, 과일즙	한지, 도자기
칠곡군	호박꿀증탕, 김치	참외피클, 누룽지	목공예, 목상자, 도자기

※ 자료 : 경상북도 유통특작과, 농정과

는 법·제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관광농원개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관련법 및 시행규칙 등의 근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타 관련법규와의 연계성이 미흡해서 관광농원 사업에서 많은 불이익이 따랐던 것도 사실이다. 지속적인 법제도의 수정과 관련법과의 효과적이고 능동적인 법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인·허가 관련서류의 간소화 및 업무 전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며, 농원의 운영사례를 연구하여 법·제도적인 보완, 수정에 참고함으로써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또한 행정관서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관광농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함께 이루어질 때, 합리적,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 질 수가 있을 것이다.

나. 금융·세계지원의 정비

현행 농어촌정비법 제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관광농원개발사업을 포함할 수 있는 관련법규를 마련함으로써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타 정책사업과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금융지원의 한도액을 늘리고, 그 상환방법도 연장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정해

져있는 금융지원을 사업규모, 특성을 감안하여 차등화 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겠다. 또한 개발 초기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운영단계에 대한 자금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반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행 8%로 되어 있는 이자율에 대해서도 타 농업관련 금융지원과 맞게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해 더 낮출 필요가 있다.

다.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완화

관광농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각 시설물에 대한 설치, 운영에 대해서 법규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관광농원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이나 의무 시설의 면적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탄력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규제기준을 두고, 이를 자율적으로 지키도록 유도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형태의 관광농원 개발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라. 담당인력의 전문성 제고

담당공무원이나 집행기관의 행정 책임자들이 농원에 대한 전반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농업전반에 걸친 지식과 서비스산업에 대한 견

해도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고, 지역실정을 감안한 유동성 있는 행정처리를 할 때 관광농원의 진정한 협력자로, 관광농원의 효율적인 경영지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마. 홍보활동의 지원

관광농원이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시민이 찾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방안이 뒤따라야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개인보다는 단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갈 수 있도록 행정관서에서 적극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농원경영자들로 구성된 협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관광농원개발사업 및 기존 관광농원의 운영에 대한 정책수립과 재정적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바. 지역활성화를 위한 개발방식의 도입

현행 추진되고 있는 관광농원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기보다는 대부분 1인 위주로 운영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참여형태라 하더라도 대표농가 혹은 개인이 독자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사업에 따른 이익이 다수의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소수의 지역주민이나 외부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는 관광농원의 양적인 증가보다는 기존 농원에 대한 질적인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입지조건, 경영현황, 수익규모 등의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VI. 결 론

관광농원개발사업은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내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체험활동, 자연학습, 휴식, 체육활동 등에 활용

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의 균형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도·농간의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증대와 인식을 새로이 하려는 정책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지구지정에 의한 실적위주의 양적인 증대보다는 조성되어 있는 관광농원에 대한 질적인 수준의 향상과 운영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대구 인근지역의 조사 대상 관광농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관광농원이 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점은, 도입시설에 대한 운영의 미흡, 관광특화상품에 대한 개발 미흡, 도·농간의 교류 미흡, 주변관광자원과의 연계 미흡, 운영자금의 부족, 농원의 안내홍보전략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법·제도적 및 지원상의 문제점은, 각종 인·허가제도와 사업승인 시 복잡한 절차, 관련시설물 설치에 대한 까다로운 규제, 사업비 지원(융자금)의 부족, 일선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유사사업으로의 적용 및 병행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미흡, 사업추진 지도 및 사후 관리의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대구인근지역의 관광농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농원 경영자들은 효율적인 관광농원의 운영을 위해서 다시 한번 관광농원에 대한 개념을 재확립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관광농원개발사업의 계획, 조성, 경영 등에 있어서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서 전문화와 특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관광농원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합리적인 투자방법을 모색해서 독특한 분위기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시민의 여가활용 장소로서 관광농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자의 노력만큼 중요한 것이 일선 행정기관의 지원과 역할 분담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준비를 하고, 금융·세제 지원을 현실화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시키며, 행정기관의 교육 및 지도로 전문성을 확보시키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관광농원개발 사업이 원 취지를 충분히 수

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며, 농원 자체적으로도 합리적인 경영을 이루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사업의 일환인 관광농원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단체,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1. 경상북도, 1997, 관광농원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pp.8-10.
2. 경상북도, 2000, 농촌소득원 개발방안에 관한 지침, 경상북도 농림과, p.33.
3. 김종진, 1996, 농어촌 휴양자원 개발사업 육성방안.
4. 농림수산부, 1995, 관광농촌마을 조성에 관한 연구, p.64.
5. 농촌진흥원, 1994, 관광농업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6. 류선무, 1995, 한국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7. 박영수, 1993, 한국관광농원의 현황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8. 유승우, 민상기, 1997, 관광농원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 농촌경제연구원, pp.2-18.
9. 이영란, 1981, 도시근교 관광농원의 지역구조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이항구, 1988, 관광농장업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관광개발연구소, pp.21-27.
11. 이호철 1997, 차별화 전략을 통한 지역 관광농업의 활성화 방안, 대구경북개발연구 제2호, pp.166-167.
12. 한국관광공사, 1989, 전국관광 장기 종합개발계획 보고서, pp.21-26.
13. 한국관광공사, 1996, 농어촌 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1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7, 관광농원 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연구.